

정기 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20년 3월 30일(화) 오전 10시30분~11시30분

2. 장 소 : 다자간 통화(코로나 19 감염차단 목적)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1350(2020.03.12.) 근거

3. 회의소집 통지 내용

- 통지일 : 2020년 3월 19일(목)
- 통지대상 : 이사 8명, 감사 2명
- 통지방법 : 이사회소집 공문 이메일 발송 및 유선 연락
- 회의목적 : 이랜드복지재단 및 산하기관 2019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심의의 건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의 건
이랜드복지재단 이사 선임의 건
이랜드복지재단 비품 불용처리 및 무상기증 심의의 건
이랜드복지재단 정관변경(안) 심의의 건

4. 출석임원 : 박성경, 정재철, 윤형주, 정순둘, 원치윤, 배극수, 손병덕 (이사 7명)
이천화, 이창구 (감사 2명)

5.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정재철 대표이사가 다자간 통화에 재적이사 8명 중 7명(박성경, 정재철, 윤형주, 정순둘, 원치윤, 배극수, 손병덕), 감사 2명 중 2명(이천화, 이창구)이 참석함을 보고하니, 박성경 이사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6. 전차 회의록 통과

정재철 대표이사가 전차 회의록을 낭독하다. 윤형주 이사의 동의와 배극수 이사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을 통과하다.

7. 감사 보고

이천화 감사가 2019년도 법인 및 산하기관 결산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다.

8. 안건보고 및 심의

<제1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및 산하기관 2019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심의의 건
박성경 이사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심정영 국장이 첨부자료와 함께 사업실적 및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다.

• 이랜드복지재단 2019년도 결산(안)

(단위:천원)

세입			세출		
항목	2019년 예산	2019년 결산	항목	2019년 예산	2019년 결산
보조금수입	5,930,000	5,903,119	사무비	245,661	215,850
재산수입	1,201,118	1,207,617	재산조성비	142,000	136,973
기타수입	939,000	933,269	사업비	1,993,778	1,848,893
이월금	3,563,251	3,563,251	전출금	1,816,054	1,816,054
합계	11,633,369	11,607,256	잡지출	5,000	-
			이월금	7,430,876	7,589,486
			합계	11,633,369	11,607,256

•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2019년도 결산(안)

(단위:천원)

기관명	2019년 세입액	2019년 세출액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3,406,856	3,215,028
병설마포데이케어센터	일반회계	440,894
	특별회계	12,619
창전데이케어센터	일반회계	582,640
	특별회계	24,315
하당노인복지관	3,807,280	3,678,382
하당노인복지관 웰빙카페	110,122	101,761
이랜드하당재가센터	62,229	47,677
진도노인복지관	1,441,271	1,324,191
광주서구노인종합복지관	5,717,330	5,464,158
광주서구노인복지센터	169,547	126,383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4,110,879	3,983,167
병설중랑데이케어센터	일반회계	342,193
	특별회계	63,769
전주꽃밭정이노인복지관	2,312,086	2,193,348
전주꽃밭정이노인복지센터	259,465	211,136
전주꽃밭정이노인복지관 꽃다음실버카페	33,419	26,825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1,815,352	1,661,560
목포이랜드재가센터	243,911	227,345
목포이랜드 더카페	68,345	51,308
목포이랜드 한땀	22,997	19,138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5,587,445	5,347,328
시립강동노인복지관 데이케어센터	일반회계	425,352
	특별회계	7,211
강동노인복지관 치매요양원	일반회계	798,506
	특별회계	6,010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일반회계	3,710,740
	특별회계	20,000
강북실버대의케어센터	일반회계	605,430
	특별회계	5,720
봉화군노인복지관	1,567,705	1,421,757

이천화 감사가 내부감사를 통해 결산이 잘 진행되었음을 설명하고, 정순둘 이사의 동의와 배극수 이사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이랜드복지재단 및 산하기관의 2019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안) 심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가결하다.

<제 2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의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박성경 이사장이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의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안건을 상정하다.

•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단위:천원)

기관명	기정(A)	추경(B)	증감(B-A)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3,534,351	3,665,005	130,654
병설마포데이케어센터	474,660	470,000	△4,660
창전데이케어센터	611,367	607,879	△3,489
창전데이케어센터(특별회계)	30,129	30,089	△40
하당노인복지관	3,503,274	3,864,166	360,892
하당노인복지관 웰빙카페	65,020	64,571	△449
이랜드하당재가센터	118,778	121,594	2,816
진도노인복지관	1,339,314	1,393,056	53,742
광주서구노인종합복지관	6,187,151	6,289,936	102,785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3,983,209	4,144,429	161,220
병설중랑데이케어센터	386,756	344,281	△42,475
병설중랑데이케어센터(특별회계)	65,879	63,969	△1,910
전주꽃밭정이노인복지관	2,418,148	2,512,265	94,117
전주꽃밭정이노인복지센터	312,289	311,769	△520
전주꽃밭정이노인복지관 꽃다움실버카페	36,546	41,594	5,048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2,770,000	3,007,000	237,000
목포이랜드재가센터	249,000	254,260	5,260
목포이랜드 더카페	68,800	67,100	△1,700
목포이랜드 한땀	24,500	24,300	△200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5,442,661	5,556,623	113,962
시립강동노인복지관 데이케어센터	462,762	414,687	△48,075
시립강동노인복지관 데이케어센터(특별회계)	8,420	8,419	△1
강동노인복지관 치매요양원	772,794	813,249	40,455

심정영 국장이 결산에 따른 이월금이 확정됨에 따라 이월금 수입 조정 및 보조금, 후원금, 전입금 등 예산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이천화 감사가 각 시설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보고가 되어 사전 검토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정순둘 이사의 동의와 윤형주 이사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의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가결하다.

<제 3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의 건

박성경 이사장이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의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다. 이에 심정영 국장이 산하기관의 운영규정 개정 사유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다.

- 통합운영규정 사용 9개 시설: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하당노인복지관, 진도노인복지관,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봉화군노인복지관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4. 인사관리규정	4. 인사관리규정	

제67조(특별휴가) 천재지변 등 자연 재해나 직원의 사기진작 및 위로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복지관은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67조(특별휴가) ①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나 직원의 사기진작 및 위로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복지관은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은 보건복지부, 지자체의 후생복지 제도에 따른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내 관련 지침 및 규정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서울시 복지시설에 대해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 시행에 따라, 자체마다 관련 기준 및 지원제도가 상이하게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 특별휴가 내 관련 항목 신설

이에 손병덕 이사의 동의와 원치윤 이사의 재정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운영규정 개정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제 4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이사 선임의 건

박성경 이사장이 본 안건을 상정하다. 정재철 대표이사는 현 이사 3인의 임기가 2020.5.7.로 만료되어 정관 제18조 ②에 의거하여 이사 선임이 필요하며, 이사회 직전에 이태웅 이사님과 윤형주 이사님께서 현 임기까지만 이사직을 수행하고 사임할 것을 표했으며, 원치윤 이사님 역시 일신상의 사유로 이태웅이사님, 윤형주 이사님과 동일하게 2020년 5월 7일까지 이사직을 수행하고 사임할 것임을 표하셨는바 새로운 이사 4명의 선임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 임기만료이사 및 사임이사 명단

성명	직위	임기	사임일자	사임사유
이태웅	이사	2017. 5. 8.~2020. 5. 7.	2020. 5. 7.	임기만료
윤형주	이사	2017. 5. 8.~2020. 5. 7.	2020. 5. 7.	임기만료
정순둘	이사	2017. 5. 8.~2020. 5. 7.	-	-
원치윤	이사	2017. 9.24.~2020. 9.23.	2020. 5. 7.	개인사유

정재철 대표이사는 임기만료 및 개인사유로 사임하시는 4명 이사를 대신하여 아래와 같이 탁월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추고 계셔서 향후 재단운영에 많은 도움과 기여가 기대되는 3명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며, 정순둘 이사님의 연임을 제안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함

이에 원치윤 이사가 동의하고 손병덕 이사가 재정하여 박성경 이사장은 본 건 이사 선임건에 대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하다. 이사장은 본 건이 만장일치로 결의되어 정순둘 이사님의 연임과 장광규, 임은경, 김광영 세 분이 새로운 이사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하다.

<제 5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비품 불용처리 및 무상기증 심의의 건

박성경 이사장이 이랜드복지재단 비품 불용처리 및 무상기증 심의 안건을 상정하다. 심정영 국장이 이랜드 재단과 이랜드복지재단이 사무실을 분리한 후, 별첨한 불용처리 및 무상기증 예정인 비품 내역과 같이 이랜드재단 사무실에 남겨진 이랜드복지재단 소유의 비품 중 사용소요가 없는 비품은 이랜드재단에 무상 기증하고, 노후로 인해 사용이 불가하거나 분실된 비품은 불용처리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이는 이천화 감사의 내부감사 시에도 권고 받은 내용으로 비품 불용처리 및 무상기증 심의 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다.

윤형주 이사가 동의하고, 배극수 이사가 재청하다. 이에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이랜드 복지재단 비품 불용처리 및 무상기증 심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가결하다.

<제 6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정관변경(안) 심의의 건

박성경 이사장은 이랜드복지재단 정관변경안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재철 대표이사는 정관 변경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다. 정재철 대표이사는 현재 우리 재단에는 총 8명의 이사님들께서 전문적이고 탁월한 정책 자문과 도움을 주고 계시지만 다양한 전문영역에 대한 사업추진과 재단의 투명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정관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사 8인(이사장, 대표이사 각 포함)을, 1. 이사 10인(이사장, 대표이사 각 포함)으로 변경하며, 제16조(임원의 선임) ② 이사 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는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②, 「2020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등에 근거하여 이사 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은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고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정관 변경 신구 대비표]

연번	조문	변경 전	변경 후
1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이사장, 대표이사 각 포함) 2. 감사 2인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u>이사 10인</u> (이사장, 대표이사 각 포함) 2. 감사 2인
2	제16조 (임원의 선임)	제16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 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③ 선임된 임원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 취임 한다.	제16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 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은 <u>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u>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③ 선임된 임원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 취임 한다.

윤형주 이사가 동의하고, 배극수 이사가 재청하다. 이에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이랜드 복지재단 정관변경안 심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가결하다.

9. 폐회선언

다른 안건이 없으므로 정순둘 이사가 폐회 동의하고 손병덕 이사가 재청하여 박성경 이사장이 가부를 묻고 전원 찬성하여 폐회를 선언하다. 이상의 의사진행과 결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출석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하다. 폐회시각 11시 30분

2020년 3월 30일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

이사장 박성경 (인)

대표이사 정재철 (인)

이사 윤형주 (인)

이사 정순둘 (인)

이사 원치윤 (인)

이사 배극수 (인)

이사 손병덕 (인)

감사 이천화 (인)

감사 이창구 (인)

